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77

발의연월일: 2020. 9. 9.

발 의 자:김용판・한기호・태영호

윤창현 · 송언석 · 권성동

최춘식 • 추경호 • 이종성

김승수 · 김영식 · 윤재옥

하영제 · 정희용 · 양금희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이 축적해온 기술, 노하우 등의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까다로워 여전히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국가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가업상속 공제의 공제대상 및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요 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1 호 및 같은 조 제6항).

주요내용

- 가. 공제대상이 되는 가업의 최소 경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매출액 요건을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편, 가업상속 공제액의 한도를 현행 200~500억원에서 400~1천억원으로 상향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 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 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이 기간 중에 준수해야 하는 자산처분 요건, 고용유지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완화함(안 제18조제6항).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천억원"을 "1조원"으로,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을 "5년이상 15년 미만"으로, "200억원"을 "400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을 "15년 이상 25년 미만"으로, "300억원"을 "6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30년 이상"을 "25년 이상"으로, "500억원"을 "1천억원"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40"으로, "5년"을 "2년"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1) 및 2) 중 "100분의 8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및 2) 중 "7년간"을 각각 "5년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6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초공제) ① (생 략)	제18조(기초공제) ① (현행과 같
	<u>о</u>)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②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	
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	
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	
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	
액이 <u>3천억원</u> 이상인 기업은	<u>1조원</u>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으로서 피상속인이 <u>10년</u>	<u>5년</u>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	

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u>10년 이상 20</u> <u>년 미만</u>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u>20년 이상 30</u> <u>년 미만</u>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다. 피상속인이 <u>30년 이상</u> 계 속하여 경영한 경우: <u>500</u> <u>억원</u>
- 2. (생략)
- ③ ~ ⑤ (생 략)
-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 <u>5년 이상 15</u>
년 미만
<u>400</u> 억원
나 <u>15년 이상 25</u>
년 미만
<u>600</u> 억원
다 <u>25년 이상</u>
1천억
<u>원</u>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u></u>
<u>5년</u>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 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 다.

-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나. 다. (생략)
 -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
 -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

.
1
가 <u>100</u>
<u>분의 40</u> <u>2</u>
<u>년100분의 20</u> -
나.•다. (현행과 같음)
라
1)

- 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 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 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 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
 -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u>100분의 60</u>
2)
<u>100분의 60</u>
마
1)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u>7년간</u>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 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에 미달하는 경우

-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u>7년간</u>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 는 경우
- 2. (생략)
- ⑦ ~ ① (생 략)

<u>5년간</u>
2)
<u>5년간</u>
2. (현행과 같음)
⑦ ~ ⑪ (현행과 같음)